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: 2016.04.11

개정: 2019.04.09

전부개정: 2019.09.26

개정: 2023.06.28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8조에 의거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씨스퀘어자산운용(이하 "회사"라 한다)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(이하 "관련 법규"라고 한다)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수수료의 종류) 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

1.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나.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다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·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마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업무 등을 제공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바. 성과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회사가 받는 금전(법 제86조, 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)을 말한다.
2. 수수료: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

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
- 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된다.
- 다. 투자자문수수료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,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- 라. 투자일임수수료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,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4조(수수료 체계)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- 혼합형 :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 지급
- 성과형 : 성과수수료만 지급

② 혼합형의 경우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제5조(수수료 부과 기준)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투자자문, 투자일임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,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, 투자자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[별지1]의 기준을 적용한다.

제6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 ① 수수료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,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

③ 투자자문수수료와 투자일임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서 혹은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제7조(수수료 징수방법) 투자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 제5조제2항에 의한 기본수수료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납입하며, 성과수수료는 계약 만기일 또는 중도인출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성과수수료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한다. 단, 수수료는 만원미만 절사한다.

씨스퀘어자산운용(주)-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8조(수수료의 설명의무)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수료의 고지) 회사는 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공시 및 통보)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영업 등록(인가)을 신청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의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1]

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

회사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
1. 수수료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

구분	수수료율		비고
	기본수수료	성과수수료	
혼합형	계약금액 x 연 1%	목표수익률(연 7%) 초과수익의 20%	
성과형	-	목표수익률(연 0%) 초과수익의 20%	

- 지급시기 : 기본수수료 (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), 성과수수료 (계약만료·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)

2. 계약 기간 중 계약금액 추가(해지)시 기본수수료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

구분	산정방법		
혼합형	추가계약시	추가계약금액 X (잔존일수 / 365) X 연 1%	(납입)
	중도해지시	중도해지금액 X (잔존일수 / 365) X 연 1%	(환급)
	※ 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계산		
	※ 회사가 정하는 별도 중도해지수수료 발생시 차감 후 지급		
성과형	-		

- 지급(환급)시기 : 추가 계약일 또는 중도인출일로부터 7일 이내

3.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성과수수료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

구분	산정방법	
혼합형	만기/중도전액해지	[최종평가금액 - ∑(각 계약건별 Hurdle 금액)] X 20%
	중도일부해지	[중도인출금액 - ∑(각 계약건별 Hurdle 금액)] X 20%
	- 각 계약건별 Hurdle 금액 = 각 계약금 x (수익률 - 연환산목표수익률)	
	- 계약금액이 여러 번 증액된 경우 Hurdle 금액은 입금건별로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며, 중도일부해지시 해지계약금액은 우선 입금된 계약건부터 정산한다.	
성과형	[최종평가금액(중도인출금액) - 계약금액] x 20%	
	- 일부해지시 계약금액 = 중도인출금액 / 전일 기준가격 x 1000	

- 지급시기 :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